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136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이용우·민병덕·김남근

김한규·백혜련·강유정

백승아 · 모경종 · 박주민

박민규 · 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 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시·도지사"를 "제9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원협의체) ① 지원협의체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 호구역을 관리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 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 •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 시 • 도 <u> 지사</u>-----. ②・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지원협의체) ① 지원협 <신 설> 의체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 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에서 농림 • 수산업 등에 종사하 는 자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및 상수원보호구 역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 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

 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